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21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1 년 11 월 9 일

## I. 재판 경과

1. 2019 년 4 월 1 일,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절차 명령 제 1 호를 발령하였다.

6.4 동 명령 제 9.4 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답변 및 회신 제출 이후 중재판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을 근거로 승인을 허가한 경우 외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서면입장의 일부로서 제출하지 아니한 어떠한 증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예외를 승인한 경우, 상대 당사자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

9.4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의 제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후, 당해 요청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가 관련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 중재판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중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

2. 2021 년 11 월 1 일, 중재판정부는 심리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 명령 제 20 호를 발령하였다. 절차 명령 제 20 호 제 12 항은 심리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시를 다루었다: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4 조에 의거,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중재판정부가 승인한 경우가 아닌 한 심리에서 공개될 수 없다.

3. 2021 년 11 월 3 일자 서한을 통하여, 양 당사자들은 추가 문서를 기록에 제출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제안된 증거물 C-720 에서 C-724 및 법적 권한 CLA-192 를 기록에 추가하기를 요청하였다. 피청구국은 제안된 증거물 R-336 및 R-337 를 추가하기를 요청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2021 년 11 월 5 일까지 상대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4. 2021 년 11 월 5 일,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주장에 답변하며, 중재판정부가 (i) “심리 직전인 동 상황에서 아래 5 건의 문서를 기록에 추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안된 증거물 C-720, C-722, C-723, C-724 및 CLA-192 의 제출을 거부하고; (ii) “증거 기록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증거물 C-721 및 피청구국의 서한에 첨부된 색인에 기재된 모든 문서를 기록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상기 문서들이 기록에 추가될 경우, 피청구국은 C-증거번호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5. 동일자 서한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2021 년 11 월 3 일 및 5 일자 서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였다. 피청구국의 2021 년 11 월 3 일자 서한에 대해, 청구인은 (i) “쓰리클라운즈가 문서 공개와 관련하여 도이치은행의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한 쓰리클라운즈와 도이치은행 간의 이메일 교신”을 기록에 추가되는 것이 허용된다면, 피청구국이 제안한 증거물 R-336 을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ii) 피청구국이 제안한 증거물 R-337 을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반대로, 청구인은 제안된 증거물 C-720, C-722, C-723, C-724 및 C-192 등을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피청구국의 반대는 “모순적인 것으로 주목될만하다”고

주장하며, 본 절차 단계에서 상기 증거물이 기록에 추가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제안된 증거물 C-721 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1 년 11 월 5 일자 피청구국의 서한에 첨부된 색인에 기재된 26 건의 문서를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양측의 요청이 적고, 본 중재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되고, 상대 당사자에게 부당한 영향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2021 년 11 월 3 일 양 당사자가 확인한 모든 문서들을 기록에 추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6. 2021 년 11 월 6 일자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청구국은 2021 년 8 월 21 일자 청구인의 서한 및 쓰리크라운즈와 도이치은행 간의 이메일 교신이 이미 증거물 R-315 로 기록에 제출되었음을 통고하였다.

## II. 중재판정부의 분석

7.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제안된 증거물 R-337 및 R-337 을 기록에 추가하라는 피청구국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주지한다. 마찬가지로, 피청구국은 2021 년 11 월 5 일자 피청구국의 색인에 기재된 26 건의 추가 문서가 기록에 포함된다는 조건 하에, 제안된 증거물 C-721 를 기록에 추가하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상기 26 건의 문서를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8.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제안한 증거물 C-720, C-722, C-723 및 C-724, 아울러 법적 권한 CLA-192 를 기록에 추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동 문서들에 대해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4 항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반면, 승인에 대한 자신의 요청은 절차 명령 제 1 호 제 9.4 항에 의거한다는 점을 주지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청구인이 제안된 증거물 R-336 및 R-337 을 기록에 추가하라는 피청구국의 요청을 반대하지 않으며, 피청구국이 절차 명령 제 9 호 제 6.4 항의 의미 내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 점을 주지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 당사자의 요청이 “본 중재의 중요한 사안과 관련이 있고, 상대 당사자에게 부당한 영향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승인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9. 중재판정부는 분쟁 중인 문서들이 방대하지 않으며 대중에 공개되었다는 점을 주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문서들이 기록에 추가되는 것은 피청구국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동 상황이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4 항 의미 내에서 충분히 예외적인 것으로 분쟁 중인 문서들을 기록에 추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4 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의 승인 없이 해당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III. 중재판정부의 결정

10. 상기를 고려하여, 중재판정부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6.4 항 및 제 9.4 항을 숙고한 바, 다음을 결정한다:

- (a) 증거 R-336 및 R-337 은 기록에 추가한다;
- (b) 증거 C-721 은 기록에 추가한다;
- (c) 청구인은 2021 년 11 월 5 일자 피청구국 색인에 기재된 26 개 문서에 "C" 증거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문서들을 기록에 제출한다; 그리고
- (d) 증거 C-720, C-722, C-723 및 C-724, 아울러 법적 권한 CLA-192 는 기록에 추가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